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8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전봉민·양금희·황보승희

박대수 · 정동만 · 이종배

이종성 · 조수진 · 김예지

윤재옥 · 서정숙 · 이주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을 양육하는 근로자나 임신기에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

의4제2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

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2.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9세"로, "2학년"을 "3학년"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 후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나누어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9세"로, "2학년"을 "3학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생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
<u>6.</u> ~ <u>9.</u> (생 략)	<u>7.</u> ~ <u>10.</u> (현행 제6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	제19조(육아휴직) ①
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	
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u>.</u>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1.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
	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 략)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생 략)

<신 설>

2.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
산하게 된 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u>9</u> 세-
<u>3</u> 학년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
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연
속하여 사용한 후 계속하여 육

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② (생략)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u>8</u> 센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 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략)

	<u>육아휴직을</u>	나누어	사용한	<u> </u>
	으로 보지 여	아니한다	<u>•</u>	
	③ (현행 제	2항과 같	달음)	
저	19조의5(육이	·지원을	위한	ユ
	밖의 조치)	1		<u>9</u>
	세		<u>3학</u>	<u>년</u> -
	1. ~ 4. (현	행과 같	승)	
	② (현행과	같음)		